

工業所有權制度 改正에 따른

각종 施行令중 改正令

정부는 特許法등 改正法律이 7月 1日부터 施行됨에 따라 관련 施行令을 7月 1日字로 公布했다. 이번에 改正 公布된 施行令은 特許法 施行令중 改正令·特許登錄令중 改正令·特許權의 수용 및 實施등에 관한 規定중·改正令·實用新案 登錄令중 改正令·不正競爭방지法 施行令등 法施行令중 改正令 5件과 施行規則 改正令 6件이다.

그 一部分의 전문을 紹介한다.

<編輯者 註>

대통령령 제12199호

특허법시행령중 개정령

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제2조의3·제2조의4로 하고, 제2조 및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미생물관련 발명특허의 출원조건) ①미생물관련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이하「부다페스트조약」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 (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에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생물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수 있다.

②미생물관련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생물을 기탁한 때에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에 그 기탁기관의 명칭·기탁번호 및 기탁연월일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수탁증등을 말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세서에 그 미생물의 입수처와 입수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 그 특허출원 후 미생물의 재기탁등으로 인하

여 새로운 수탁증이 발행된 때에는 특허출원인은 지체없이 그 수탁증의 사본등 관련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설정의 등록후 새로운 수탁증이 발행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생물의 기탁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 (미생물시료의 분양) ①미생물 관련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한 자는 그 출원이 공개된 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미생물시료의 분양신청이 있는 때에는 미생물을 신청인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1. 미생물의 분양신청 목적이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2. 분양된 미생물이 국내에서 이용될 것
 3. 분양된 미생물이 제3자에게 재분양되지 아니할 것
- ②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규칙(이하『부다페스트조약규칙』이라 한다) 제11.3(a)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부터 미생물시료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생물시료분양증명교부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이나 명칭(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또는 영업소소재지
2. 출원(또는 특허)과의 관계 및 미생물의 기탁사실
3. 발명의 명칭
4. 출원 및 공개의 표시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공개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관계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생물시료의 분양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승인)

①법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 이하「특허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기간의 연장신청 당시 국내에서 실시 중인 발명 또는 실시준비가 완료된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발명

②특허청장은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허가·등록에 소요된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특허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합산한 특허기간은 당해허가·등록일로부터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특허권설정등록후 정당한 이유없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허가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2.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자료등의 보완기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 연장승인의 효력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여러개의 항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허가·등록을 받은 항에만 미친다.

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특허발명이 그 연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기간의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의3 (특허기간연장승인의 신청등)

①특허발명이 제9조의2 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특허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특허권자는 당해 특허발명의 특허기간만료일 3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발명의 명칭
3.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 특허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이유 및 연장신청기간
5. 허가·등록에 소요된 기간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중이거나 실시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특허청장은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기간연장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허가·등록업무의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기간연장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 연장의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의견을 공고일로부터 2월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특허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특허기간연장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 및 특허기간 연장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특허청장은 특허기간연장승인을 받은 특허권자에게 대하여 당해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소유권에 관한

연수를 받은자』를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과정을 수료한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소유권에 관한 연수를 받은자』를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자』로 하며, 동항제2호중 『심사 및 심판사무에』를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소유권에 관한 연수를 받은자』를 『해당하는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심사 및 심판사무에 종사한자』를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자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연수과정을 수료한자』로 하며, 동조에제5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공해방지에 유용한출원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연구기관의 직무에 관한 출원권과 이들 기관이 심사청구한 타인의 출원

부 칙

①(시행일) 이령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2조의 규정중 부다페스트조약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조약이 대한민국의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며, 동조약 시행이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미생물기탁 및 미생물시료의 분양신청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심사관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

조치) 이령 시행당시 심사관·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령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심사관·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12200호

특허등록령중 개정령

특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법 제5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및 법 제51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

제3조제3호를 다음과같이 한다.

3.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신청 법 제5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신청 및 법 제51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법 제51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및 법 제51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신청서) ①이 영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상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 2통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특허번호 및 발명의 명칭
2. 등록의 목적이 특허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이하 같다)·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나 영업소소재지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변리사가 대리인인 때에는 변리사등록번호)및 주소나 영업소소재지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
6. 등록의 원인과 그 발생연월일
7. 등록의 목적
8.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하여 기재할 사항

제26조의 제목 『(신청의 절차)』를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하고, 동조제1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의 이에 준하는 증명서는 작성후 6월이내의 것에 한한다.

부 칙

이 령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2202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0조 내지 제52조」를「법 제50조·법제51조·법 제51조의8 및 「법 제51조의9」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51조제2항·제

3항 또는 법 제52조제3항을 「법 제51조·법 제51조의8 및 법 제51조의9」로 하고, 동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8. 통상실시권의 범위

제4조제1항중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허출원인』을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 또는 법 제5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제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보상금 또는 대가』를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법 제51조제2항』을 『법 제51조제1항1호』로 한다.

제7조제5호중 관호안의 『보상금 또는 대가』를 『보상금』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특허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의 불허여·제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수급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제한·수

용·취소, 특허발명의 실시와 보상금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과 그 대가에 관한 사항, 법 제5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및 법 제51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호내지 제3호의에 특허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제2항 「특허청관리국장」을 「특허청차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령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2201호

실용신안등록령중 개정령

실용신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동법 제5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및 동법 제5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취소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동법 제5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및 동법 제51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

부 칙

이 령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2203호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정경쟁심의위원회)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허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 소속공무원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특허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정경쟁행위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

2. 부정경쟁행위방지를 위한 시정권고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지침의 수립

3. 기타 부정경쟁행위방지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지방부정경쟁심의위원회)

①부정경쟁방지정책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지방부정경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부정경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시·도지사」라한다)가 이를 정한다.

제8조 (시정권고의방법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및 시정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청문의 절차) ①특허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권한의 위임등) ①특허청장은 법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정취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특허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상거래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그 위임을 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분기별로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案) 第42回 發明教室 (內)

本會는 發明人口의 底邊擴大와 아울러 發明人들간의 어려운 問題點들을 相互討論하여 對話를 통한 發明意慾鼓吹와 優秀發明을 創出하고자 다음과 같이 8月中 第42回 發明教室을 開講코자 하오니 많은 參加바랍니다.

- ◎ 日 時 : 1987年 8月 8日 (土) 午後 1시
- ◎ 場 所 : 特許廳 研修室 (풍림빌딩 10층) (參加費 없이 教材無料 提供)
- ◎ 문의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연수부 (557-1077/8)